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2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박 정·이기헌·정진욱

김성원ㆍ허 영ㆍ김영환

박상혁 • 정동영 • 박지혜

정성호 · 김주영 · 윤후덕

김성회 · 김용태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, 화재·붕괴·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해 피해 등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비 및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호나목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나목 중 "인한 피해"를 "인한 피해,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| 제3조(정의) |
|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 , |
| 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ㆍ신 | 1 |
| 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 | |
| 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 | |
| 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| |
| 가. (생 략) | 가. (현행과 같음) |
| 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 | 나 |
| 폭발 · 교통사고(항공사고 | |
|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 | |
| · 화생방사고 · 환경오염사 | |
| 고・다중운집인파사고 등 | |
|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 | |
|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| |
|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 | |
| 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 | |
|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| |
| 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 | |
| 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| |
|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 | |
| 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 | |
| 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 | |
| 먼지, 「우주개발 진흥 | |

법」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의 추락·충돌 등으로 <u>인</u> 한 <u>피해</u>

2. ~ 13. (생 략)

----인한 피해, 북한의 각 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접경지역 피해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피해

2. ~ 13. (현행과 같음)